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. 9. 16 선고 2021가단338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2. 8. 12.

판결 선고2022. 9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8,755,81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5년 내지 2016년 사이에 피고에게 사천시에 소재하는 주택 등 100곳의 현장에 대한 배관공사(이하 '이 사건 배관공사'라 한다)를 의뢰하여 피고가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. 피고가 배관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해보니 피고는 실제로 공사한 내역보다 38,755,815원¹⁾ 2) 을 더 지급받았다.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더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일관성이 없고, 피고의 공사내역 금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, 갑 제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38,755,815원을 보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장형

1)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73,500,000원 + 피고가 이 사건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측으로부터 받아갔으나 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재 및 경비 26,445,815원 - 피고의 공사 내역 61,190,000원 = 38,755,815원

2) 다만 원고는 2022. 5. 10.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서증(갑 제9 내지 11호증)에서는 피고가 정산,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23,689,815원(=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73,500,000원 + 자재 및 경비 30,689,815원 - 피고의 공사 내역 80,500,000원)이라고 주장하였다.